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9월 17일’에서 ‘2027년 9월 17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 조문대비표(첨부)

2)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등에 따라 행정예고 생략

국토교통부예규 제409호

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

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2024년 9월 17일”을 “2027년 9월 1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「훈령 ·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9월</u> <u>17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1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9월</u> <u>17일</u> -----.